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필자 소속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영훈 사업관리본부 제도개선과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취지

세계 67개국이 참여한 WTO 기본통신그룹은 지난 2월 15일 2년 이상 계속된 세계각국이 제시한 양허안에 대한 힘겨운 협상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세계각국별 통신시장 개방범위, 시기 등에 대한 양허내용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먼저 금년내에 전기통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등 내년부터 시행될 양허내용에 따른 본격적인 통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내 통신시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틈새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등 별정통신사업자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동법 개정안의 경우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전면 개방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정보통신사업의 경쟁활성화를 촉진키 위해 도입한 별정통신사업자 제도의 경우 일정한 등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진입여건을 완화했으며 사업자간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해 과거 인가제로

적용하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별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약탈적 요금등 불공정한 요금설정행위를 금지유형에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도 수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신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공역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전화역무, 가입전선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등은 기간통신역무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외의 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설비를 임차하거나 보유하지 않고도 기간통신역무-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 등의 제공이 가능해져 통신설비 보유여부에 따른 사업자 구분의 적용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틈새형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를 신설했다.

<표 1> 전기통신사업자별 제공역무

구 분	설비유무	제공역무	비 고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보유	기간통신역무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역무
부가통신사업자	설비 임차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제외 역무
별정통신사업자	설비 임차	기간통신역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설비 미보유, 미임차	기간통신역무	국제콜백전화
	설비 설치	전기통신역무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현행전기통신사업법으로 수용되지 못한 전기통신역무의 일부를 별정통신사업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규모를 고려해 동일인에 대한 지분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일정요건만 갖추어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WTO 양허내용을 감안, 지분참여를 1999년부터 부분허용(49% 이하) 키로 하고 2001년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제공이 가능한 음성재판매사업, 인터넷폰사업, 별도의 통신설비없이 제공이 가능한 국제콜백전화사업 등이 해당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국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내통신사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사업자의 전용회선망을 이용한 전화역무의 제공등이 가능해져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별정통신사업별 제공사업자

구 분	서비스 종류	제공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음성재판매(서비스, 무선재판매 포함)	별정통신사업자
	인터넷폰	별정통신사업자
	국제콜백전화	별정통신사업자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자,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된 건물·시설물등 소유주나 임대인

특히 별정통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등록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등록요건은 통신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법인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며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는 이용약관은 별도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결격사유, 사업의 양도·양수, 송계, 휴지·폐지, 사업의 폐지명령등, 이용약관 신고·고시, 통계의 보고등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동등하게 적용키로 했다.

전기통신요금 자율화

정보는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과 관련된 이용약관에 대해 지난 4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원칙, 신고예외』에서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전환하고 인가역무 및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시내, 시외, 국제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국내 전용회선 임대서비스) 역무에서 한국통신, 이동전화 및 무선회선서비스 역무에서 SK텔레콤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사업에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통신사업자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전기통신서비스요금 인가제를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결정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적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공중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 추진했다. 또한 국가독점사업에 대한 공공요금을 적용하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전화요금(국제전화요금은 제외)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진입규제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주요 의제중 하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는 유선계 및 한국통신에 대해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선계에 대해 33% 이하 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양허한 수준을 감안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결격대상에서 외국인 대표자 및 외국인 임원 1/3 초과 법인을 제외키로 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1998년부터 지분제한을 유선계 33% 이하, 한국통신 20% 이하, 무선계 33% 이하까지 완화하고 2001년부터 유선계 49% 이하, 한국통신 33% 이하, 무선계 49% 이하 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동일인(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부터 유선계 10%, 무선계 33% 이하까지 허용키로 했다.

<표 3> 연도별 지분제한 현황

연 도	구 分	유선계	한국통신	무선계
현 행	동일인	10%	-	33%
	외국인	0%	0%	33%
1998년 ~ 2000년	동일인	10%	-	33%
	외국인	33%	20%	33%
2001년 ~	동일인	10%	-	33%
	외국인	49%	33%	49%

전국적 규모의 전화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경영 분리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따라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속속 출현하고 있으나 국가기간통신망의 근간을 이루는 전화망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화망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보장코자 전국전화사업자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등 공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국전화사업자의 경영상 공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주주이익을 보호키 위해 주주협의회 설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등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신설했다. 현재 전국적인 규모의 전화 역무제공사업자는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등이다.

전기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허용

개정안에 신설된 전기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허용 조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국외에서 국내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 외국사업자는 1998년부터 공중망접속 음성재판매사업을 제외한 모든 재판매사업이 허용되지만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자 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이와함께 국경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되는 의무규정은 이용약관 신고, 변경, 공시, 보호, 손해배상 및 절차, 금지행위 및 조치, 불온통신 단속, 통신비밀 보호, 업무 제한 정비, 통계보고등이다.

검토의견

* 별정통신사업자제도 신설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사

업법이 개정된 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별정통신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의 역무로는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콜백전화등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틈새형서비스가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보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틈새형서비스외의 다른 사업도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현재 별정통신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진입요건은 등록제를 도입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시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조건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사항으로 인가업체별 차별화가 우려되므로 관련 조문의 삭제 또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부령에서 정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별정통신사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입요건을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한단계 낮추어 추진하는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는 별도의 통신망 보호등 의무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므로 국내 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진입요건의 최소화 내지 완화가 심도있게 제논의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요금 자율화에 대해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공정행위의 금지유형에 불공정한 요금 설정

행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통신요금정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신규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기통신역무별로 허가한 통신사업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참여가 가능(별정통신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해 관련조문을 현행처럼 유지하든지 아니면 요금하한제를 도입등 약탈적 요금설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금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맺는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및 7월 임시국회에 상정·의결해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우리측이 서명한 양허내용에 따라 선 국내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사업자와의 경쟁여건을 조성키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로 보여진다.

어떤 법령이든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원급을 조정할 수 있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함께 국내 전기통신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환경, 경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도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검토되어야만 정부가 지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통신사업경쟁체제 도입, 통신사업구조 개편,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등이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